원금 비보장 상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대상자 확인서

(은행보관용)

전산인자

신한은행 앞

1. 본인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주1)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미만**주2)임을 확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청의 사정으로 직전연도 소득확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전전연도의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주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거주자가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2. 국세청이 계약기간 중 가입자격을 검증하여 가입자격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은행에 가입자격 부적격을 통지합니다.
3. 상기 부적격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적격 통지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정기간(2개월)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사망, 해외 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일반적인 확인사항

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2025년 12월 31일(상품별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기준)까지** 가입 가능한 한시적 금융상품입니다.
2. 조세특례법상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자산총액 40%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또한, 국내 상장 주식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4. 전환형 펀드로 설정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동일 운용사의 전환형 펀드로 전부전환이 가능하며(부분전환 불가), 이 경우 펀드의 해지·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전환형 펀드 이외의 펀드간 전환이나 이동은 불가하며, 판매회사를 이동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 및 자필서명 필수)	확인 ✓
1. 향후 **국세청이 은행에 부적격 통지를 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에 의거 해당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추가 입금이 제한됩니다.**	☐
2.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총 금액의 총 6.6%(지방소득세 포함)를 추징세액으로 납부하며, 3년 이후 5년 미만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은 없으나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연장없이 추가납입은 계속 가능하나 **소득공제 혜택은 가입한 날로부터 5년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3.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할 경우 실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 추징되며(차액 환출)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
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총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 내)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배당수익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합니다.**	☐
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복수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제형 상품의 계약금액, 한도, 중복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타행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8. 전환형(엄브렐러) 상품은 동일 운용사의 전환형 상품에 한하여 전환이 가능하며, 은행의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 적용이 가능합니다.	☐
9. 본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 2항 기준으로 **"거주자"**임을 확인합니다. **비거주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거주자 **(가능)** ☐비거주자**(불가)**

○ 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상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계약대상자 확인서(교부용)』 및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을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투자자 : 인감 또는 서명 **대리인 :** 인감 또는 서명

상담직원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담당자	확인자

원금 비보장 상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대상자 확인서

신한은행 (교부용)

1. 본인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주1 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미만**주2임을 확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청의 사정으로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전전연도의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주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거주자가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2. 국세청이 계약기간 중 가입자격을 검증하여 가입자격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은행에 가입자격 부적격을 통지합니다.
3. 상기 부적격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적격 통지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정기간(2개월)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사망, 해외 장기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일반적인 확인사항

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2025년 12월 31일(상품별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기준)까지** 가입 가능한 한시적 금융상품입니다.
2. 조세특례법상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자산총액 40%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또한, 국내 상장 주식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4. 전환형 펀드로 설정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동일 운용사의 전환형 펀드로 전부전환이 가능하며(부분전환 불가), 이 경우 펀드의 해지・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전환형 펀드 이외의 펀드간 전환이나 이동은 불가하며, 판매회사를 이동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향후 **국세청이 은행에 부적격 통지를 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에 의거 **해당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추가 입금이 제한됩니다.**

2.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총 금액의 총 6.6%(지방소득세 포함)를 추징세액으로 납부하며, 3년 이후 5년 미만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은 없으나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연장없이 추가납입은 계속 가능하나 **소득공제 혜택은 가입한 날로부터 5년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할 경우 실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 추징되며(차액 환출)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총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 내)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배당수익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합니다.**

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복수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제형 상품의 계약금액, 한도, 중복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타행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전환형(엄브렐러) 상품은 동일 운용사의 전환형 상품에 한하여 전환이 가능하며, **은행의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 적용이 가능합니다.**

9. 본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 2항 기준으로 "거주자"임을 확인합니다. **비거주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 궁금하신 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1577-8000) 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금 비보장 상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신한은행 (교부용)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저축자와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 체결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른다.

제2조(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저축방법 등) ① 은행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출금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거래카드,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해야 한다.

제3조(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 제1항에서 정하는 청년[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여야 한다. 다만,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서 정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 가입 당시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입 당시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득 기준연도는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1~7월 기간 중 가입하는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을 적용한다.
4.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적증명서 (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은행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저축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은행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저축자는 국세청장이 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은행에게 알려야 한다. 저축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2개월)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저축대상 상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은 은행의 홈페이지(www.shinhan.com)에 고지하기로 한다.

제5조(저축한도) ① 저축자는 연 600만원 이내(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② 제6조 제1항에 따른 가입기간 이후 한도정정(증액)은 불가하다.

제6조(가입기간 및 저축기간)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상품별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기준)까지로 한다.
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연장 없이 추가납입은 계속 가능하다.
단, 제8조 제1항에 따른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1항에 의거 가입한 날로부터 5년 동안만 받을 수 있다.
④ 만기일은 환매대금 지급일로 한다.

제7조(전환 및 인출) ① 저축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전환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 간의 전환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상품으로만 가능하다.
③ 저축자는 납입한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출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세제혜택)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 받는 저축 등의 경우

제9조(세제혜택 제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10조(양도제한 등) ① 저축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5장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변경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추징)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설정된 경우로서 저축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본항의 해지로 보지 않는다), 은행은 해당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100분의 6.6(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저축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② 은행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추징한 경우 은행은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저축자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저축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6. 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④ 저축자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①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를 제출하며,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은행은 약관을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조세특례제한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과 개별 금융투자상품별 약관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5조(분쟁조정) 저축자는 은행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개정) 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